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5. 11 선고 2015가단74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4. 27.

판결 선고 2016. 5. 11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강릉시 C 대 1,388㎡ 중 별지 도면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안의 (가)부분 위에 있는 목조 단독주택 73.50㎡를 철거하고,  
나. 제1.가항 기재 (가)부분 토지 73.50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노태현

별지